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관리 방법》 실시에 대한 문의 답변

목 차

머리말.....	1
제1부분 종합적 문제.....	2
Q1. 어떤 법률과 행정법규가 <관리방법>의 상위법 인지? 우리나라에서 <관리방법>을 제/수정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2
Q2. <관리방법>은 기존 <전자정보제품 오염 관리 방법>(이하 "기존 방법"으로 약칭)의 기반위에서 수정된 신규 부서 규정으로 원 방법에 대비하여 <관리방법>의 관련 요구는 어떤 주요 조정을 하였는지?.....	3
Q3. <관리방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중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는데 기존 방법중에서는 그를 "유독, 유해물질 또는 원소"라고 하였다. 이 두가지 표현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Q4. <관리방법>은 우리나라의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적용 되는지?..	5
Q5. <관리방법> 적용 범위내의 제품에 대하여 <관리방법>를 만족하는 제품 생산일자에 기준하는지 아니면 시장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5
Q6. 수입제품에 대하여 <관리방법>은 여전히 제품의 생산일자를 기준하는지? 통관 또는 시장 진입 시기와 관련 있는지?.....	5
Q7. <관리방법>은 여곳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국가기준 또는 업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및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이들 기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지?.. 5

Q8. <관리방법> 제3조 제(六) 조항에서는 친환경 사용기한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친환경 사용 기한은 안전사용 기한과 동일한지?..... 7

Q9. 전기전자제품은 구조가 복잡하다. 어떻게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을 확정하는지? 친환경 사용기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7

제2부분 <관리방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8

一、 <관리방법> 적용범위 설명..... 8

Q10. <관리방법>중 전기전자제품 정의중의 "부속제품"은 무엇을 말하는지?..... 8

Q11. 전기전자제품 정의중 "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련되는 설비 제외"는 주로 어떤 설비를 제외하는지? 이것 외에 또 어떤 제품과 상황이 배제 되는지?..... 9

Q12. <관리방법>에는 <전자정보제품 분류 설명(주석)>과 유사한 파일로 <관리방법> 적용 제품을 나열한 목차가 있는지? 10

Q13. 관계자는 어떻게 전기전자 설비가 <관리방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지?..... 13

二、 관련 적용 범위의 구체적인 사례..... 15

Q14. 전동 운송기계 및 공구는 <관리방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15

Q15. 활용이 다른 전자와 축전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지?..... 15

Q16. 활용이 다른 전선 케이블에 대해 어떻게 <관리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15
Q17. 토너, 카트리지 등 소모품은 <관리방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16
Q18. 위탁가공 제품과 수탁가공 제품은 모두 <관리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	16
Q19. <관리방법> 적용범위외 제품에 예정 설치되는 전기전자제품은 <관리방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17
Q20. A/S중의 조립완제품 교환보증 제품은 <관리방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17
Q21. 이미 판매 사용후 중고 전기전자제품으로서 다시 판매시 <관리방법>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17
Q22. 임대 제품은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17
Q23. <관리방법> 실시후 해외 모 회사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게 전매할 경우 <관리방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18
 제3부분 <관리방법>의 기본요구.....	18
一、<관리방법>의 실시 및 기업 집행 과정.....	18
Q24. <관리방법>의 실시 및 기업 집행과정은 대체로 어떠한지?.....	18
二、유해물질 제한 종류.....	19
Q25.<관리방법>중 제3조 제(五)관중의 "7.국가 규정이 기타 유해물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19
三、라벨 요구사항.....	20
(－) 과도기내 기준에 관한 집행.....	20

Q26. <관리방법>실시 날자전에 관계자는 SJ/T 11364-2014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20

Q27. 기업은 어떻게 조작하여 SJ/T 11364-2014의 관련 규정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어떤 파일에 근거하여 제품중의 유해물질 정보에 대하여 성명을 해야 하는지? 21

Q28.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 시작일자는 어느 날짜에 준하는지? 21

Q29. SJ/T 11364-2014 정식 실시 후 기업에서 사용을 다 하지 못한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삽입 페이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22

(二)기준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22

Q30. <관리방법>의 적용범위는 전기전자제품, SJ/T11364-2014의 제품 적용범위는 전자전기 제품이다. 기업은 SJ/T11364-2014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22

(三) 전기전자설비 부속제품에 관한 라벨 문제 23

Q31. 생산조립을 위한 구매 활동에서 공급체인 상/하위 기업은 유해물질 정보를 어떻게 전달 및 표시해야 하는지? 23

Q32. 판매후 교환보증 또는 정비에 사용되는 예비부속품은 표시를 해야 하는지? 23

Q33. 자체는 전기전자설비의 부품에 속하지 않지만 조립 완제품과 함께 판매할 경우는 표지를 해야 하는지?

함량표에는 이들 부품의 유해물질 함유 상황을 명기해야 하는지? 24

Q34. 분해 가능한 전기전자설비 부품에 대하여 그 자체도 전기전자설비에 속할 경우 친환경 사용기한은 단독적으로 주석하는지 아니면 조립 완제품과 함께 주석을 하는지? 24

Q35. 다수 전기전자제품이 포함된 플랜트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TV 및 그와 함께 판매하는 리모컨은 모두 단독 표지를 해야 하는지? 25

(四) 표시 내용 및 마크에 관한 구체요구사항 25

Q36. 제품중의 유해물질 함량이 모두 GB/T 26572-2011에 규정된 제한량 요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SJ/T 11364-2014의 [그림1]에 표시한 "e" 라벨 표시를 해야 하는지? 25

Q37. SJ/T 11364-2014 제5.1 [그림1] 라벨 중의 "e"는 어떤 글자체 인지?
비율은 어떠한지? 26

Q38. SJ/T 11364-2014에는 그린표지와 오랜지색 표지가 규정되었는데 반드시 이 2가지 색깔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업의 집행 과정에서 제품 자체 색깔이 표지와 비슷한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26

Q39. SJ/T 11364-2014 제5.4.2중에 규정된 표지 규격은 최소 5mm×5mm이다. 이와 같은 크기의 표지를 제품에 부착하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26

Q40. SJ/T 11364-2014 제6.6.2 [표1] 최 하단의 "업체는 이 곳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표중의 "x"를 표기한 기술 원인에 대하여 진일보 설명할 수 있다"는 무슨 뜻인지? 27

Q41. SJ/T 11364-2014는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 표지는 부품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제품의 부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부품은 성명된 유해물질 함량표에 나열해야 하는지? .. 27

Q42. "기타"로서 구분하기 어려운 부품을 표시할 수 있는지? 즉 "기타"를 SJ/T 11364-2014 [표1]중의 부품 명칭으로 한다. 28

Q43. 제품 설명에서 SJ/T 11364-2014 [표1]에 주석된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사용 할 경우 도표의 표지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 28

Q44. SJ/T 11364-2014 제6.3에서는 "...,[그림2]를 선택하여 표지를 할 경우 표지중의 숫자를 표지제품의 실제 친환경 사용기한으로 대체하고 또한 제품설명에서 친환경 사용기한내의 사용조건, 부속제품 특별 마크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사용조건, 부속제품 특별 마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 29

(五) 일부 구체적인 표지 사례..... 30

Q45. 현재 다수 전기전자 제품은 배터리를 분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은 배터리와 함께 하나의 표지를 주석하는지? 30

Q46. 어떤 핸드폰 제품의 라벨은 배터리 케이스내에 있는데 마크는 라벨과 같이 이 위치에 주석을 달 수 있는지?..... 30

Q47. 제품 설명과 포장이 일체화 경우 마크와 함량표를 포장위에 함께 주석을 할 수 있는지?..... 30

四、제한량 요구사항..... 31

Q48. <관리방법>은 <기준도달 관리 목차>에 편입된 제품은 제한량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업체는 <기준도달 관리 목차>에 참여 및 제정을 할 수 있는지?..... 31

Q49. <기준도달 관리 목차>에 편성된 제품은 어떤 유해물질의 제품중에서의 활용을 명확히 예외(면제)를 해야 하는지?..... 31

Q50. <기준도달 관리 목차>는 유예 기간을 정하는지?..... 31

Q51. <관리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기준도달 목차>에 편성된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합격 평가제도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격 평가 제도는 도대체 어떤 형식과 내용인지?..... 32

제4부분 <관리방법>의 기타 요구사항..... 32

Q52.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및 생산도 대응된 국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예조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서 친환경에 유리한 방안을 채택한다. 그렇다면 제품 설계와 생산에 대하여 경성 요구는 있는지? 32

Q53. 전기전자제품 포장은 <관리방법>의 관할범위에 속하는지?..... 33

Q54. <관리방법>은 전기전자제품 폐기후의 회수, 처리, 재활용 문제에 관련되는지?..... 33

제5부분 관련 별칙..... 34

Q55. <관리방법>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하여 제3장의 별칙에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엇때문인지?..... 34

Q56. <관리방법> 효력 발생 후 최종 제품 생산자는 양호한 그린 공급고리 관리

체계를 가진다 해도 최종제품이 공급 고리의 원인 때문에 해당 법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최종 제품 생산자이 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그의 상위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지?..... 34

머리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은 이미 2016년 1월 6일에 발표하였고 또한 2016년 7월 1일 부터 공식적으로 실시하였다. 관계자의 <관리방법> 각항 요구에 대한 이해를 돋고, <관리방법>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 및 정보화부 에너지절약 및 종합활용사는 공업 및 정보화부 전자공업표준화연구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공업 및 정보화부 전자 제5 연구원 및 중국전기공업협회, 중국가정용전기협회, 중국전자에너지절약 기술협회, 중국가정용전기연구원, 중국전자비디오업종협회 등과 함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 실시에 자주 보는 문제점 답변>(이하 <자주 보는 문제점 답변>이라고 약칭)을 편집하였다.

<흔히 보이는 문제점 답변>의 편집 과정에서 중국외국인상인투자협회 투자적회사(ECFIC) 사업위원회 환경사업팀, 유럽전기전자종업기구, 미국정보산업기구(USITO),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등 국외 관련 협회와 기구 및 국내외 관련 업종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다. 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재정부, 환경보전부, 상무부, 관세청, 품질감독검사총국의 동의를 받은 후 <자주 보는 문제점 답변>을 편집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에 발표를 하였다.

관계자가 <관리방법> 및 관련 지원 기준의 집행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hbc@miit.gov.cn 및 wrfz@cesi.cn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본 파일은 <관리방법> 및 관련 지원 파일에 따라 제정/수정 및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바로 갱신과 조정을 한다.

제1부분 종합적 문제

Q1. 어떤 법률과 행정 법규가 <관리방법>의 상위법 인지? 우리나라에서 <관리방법>을 제/수정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답: <관리방법>은 부서급의 규정으로 그의 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과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 조례>이다.

<관리방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주로 아래의 몇개 차원에서 주로 구현된다.

1. 적극적으로 <중국제조 2025>를 구체화하고, 그린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그린제품을 개발하고, 그린제조체계를 구축한다.
2. 전기전자제품중의 유해물질 제한 사업을 우리나라 공업 청결생산 및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의 기본 사업으로 하고 "오염 방지, 예방 선행"의 환경보전 원칙을 구현하고 "원천으로부터 다스리"는 사업 사고맥락을 구체화 한다.
3.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을 업종 관리에 편성하여 법제화를 실현하고 또한 글로벌과 통합한다.
4. 전기전자제품중의 유해물질 대체 또는 감량화를 추진하고 생태 설계를 선도하고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사용 및 말단 처치 등 과정중의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 및 종합활용을 촉진한다.
5. 산업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를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확보한다.

Q2. <관리방법>은 원 <전자정보제품 오염 관리 관리방법>(이하 “원 방법”으로 약칭함)의 기반위에서 수정된 신규 부서 규장으로서 원 방법에 대비하여 <관리방법>의 관련 요구는 어떤 주요 조정을 하였는지?

답: 원 방법에 비하여 수정후의 <관리방법>은 구체적 요구차원에 대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조정을 하였다.

1. 적용범위

원 방법 수정후 이름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원 방법에 대비하여 <관리방법>의 적용범위는 원 방법의 전자정보제품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하였다. 단, 핵심 내용은 모두 유해물질 제한 사용이다.

2. 합격 평가 제도 관련

<관리방법>은 여전히 “2 스텝”의 사업 사고맥락을 채용하였다. 즉 “첫 스텝”은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의 제품에 대하여 단지 그중의 유해물질 정보를 성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표지 요구 기준을 따른다. “두번째 스텝”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기준도달 관리 목차>1(이하 “기준도달 관리 목차”로 약칭 함)에 진입된 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제한량 요구를 실시하였다.

다른 점은 “두번째 스텝”에 관련되는 합격 평가방식에 대하여 <관리방법> 제18조는 “국가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합격평가제도를 구축”한다고 제출하였다. 즉 산업발전의 실제에 따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합격평가제도를 제정하고 또한 <관리방법>에 확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문서를 별도로 제정하고 구체조치와 방법을 명확히 한다.

3. 포장물 표지에 관한 요구를 삭제하였다.

<관리방법>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생산자, 수입자의 포장물 제작, 사용시 무해, 쉽게 분해 및 회수 활용에 편리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품 포장물 표지 요구에 관한 국가기준을 발표하였기에 <관리방법>은 원 방법의 제품 포장물에 관한 표지 요구를 삭제하였다.

Q3. <관리방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중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였는데 원 방법중에서는 그를 “유독, 유해물질 또는 원소”라고 하였다. 이 두가지 표현방식은 어떤 구별이 있는지?

답: <관리방법>은 제한 사용 물질에 대한 기술을 규범화하고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Q4. <관리방법>은 우리나라의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적용되는지?

답: <관리방법>은 우리나라의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생산하고 중국내륙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은 <관리방법>의 관련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Q5. <관리방법> 적용 범위내의 제품에 대하여 <관리방법>를 만족하는 요구는 제품 생산날짜에 기준하는지 아니면 시장 진입 시간에 기준하는지?

답: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의 제품에 대하여 <관리방법> 요구에 대한 만족은 제품 생산날짜에 준한다. 즉, 관계자는 2016년 7월 1일 및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 <관리방법>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그중에서 생산날자는 제품이 생산라인에서 모든 공정을 완성하고 검사 또한 포장을 걸쳐 시장에서 판매할수 있는 완제품시의 날짜를 가리킨다.

Q6. 수입제품에 대하여 <관리방법>은 여전히 제품의 생산날짜에 기준하는지? 통관

또는 시장진입 시간과 관련이 있는지?

답: 수입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의 요구는 같으며 실시시간은 모두 제품의 생산날짜에 준한다. 통관 또는 시장투입의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Q7. <관리방법>은 여러곳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및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를 언급하였는데 이들 주로는 어떤 기준을 가리키는지? 이들 기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지?

답: <관리방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물질 제한사용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은 현재 아래 기준(기준 수정표 포함)를 가리킨다.

1.《전자전기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표지 요구》(SJ/T11364-2014) ;

2.《전자전기제품중 제한물질의 제한량 요구》(GB/T26572-2011) ;

3. 유해물질 검측 방법 기준 :

《전자전기제품 6종 제한사용 물질(연,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의 측정》(GB/T 26125-2011 , IDTIEC 62321 : 2008) ;
《전자전기제품중 Six valence chromium의 측정 원자 형광 분광법 》(GB/T 29783-2013) 。

상기 기준은 모두 <관리방법>의 실시를 위하여 결합 제정된것이며 <관리방법> 규정이 반드시 집행하는 기준에 속한다. 업체는 <관리방법>이 채용한 기준을 집행해야 <관리방법>요구를 만족할수 있다. 때문에 적용 범위내의 제품은 반드시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Q8. <관리방법> 제3조 제(六)항에서는 친환경 사용기한의 개념을 제출하였는데 친환경 사용기한은 안전사용기한과 동일시 한지?

답: <관리방법>중의 정의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친환경 사용기한은 사용자가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전자제품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누설 또는 돌변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을 심각히 오염하거나 그의 인신,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기한을 가리킨다. 안전사용기한과 친환경 사용기한은 전혀 다른 두개의 개념이다. 친환경 사용기한은 전기성능안전, 전자기 안전 등 차원의 요소로 한정되는 사용기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 상황에서 안전문제점은 수시로 일부 유해물질의 누설 문제를 수반한다.

Q9. 전기전자제품은 구조가 복잡하다. 어떻게 어떤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을 확정하는지? 친환경 사용기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 <관리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은 업체로부터 스스로 제정할수 있으며 또한 각 업종협회가 본 업종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의 지도 의견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 한다. 업체는 <전자정보제품 친환경 사용기한 통칙>(SJ/Z 11388-2009)중의 방법을 참조하여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을 확정할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완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은 해당 제품중 친환경 사용기한이 최고 짧은 부품의 시간기한에 준해야 한다. 친환경 사용기한의 확정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

제2부분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一、<관리방법> 적용범위 설명

Q10. <관리방법>중 전기전자제품 정의중의 "부속제품"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답: <관리방법>중 전기전자제품 정의중의 "부속제품"은 <관리방법> 적용범위내 전기전자설비에 사용되는 모듈/부품, 소자 및 자재를 가리킨다.

주: 전기전자제품의 표준 부품 또는 옵션 부품 및 정비, 리퍼비시,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예비부품도 상기 모듈/부품에 속한다. 그중 표준부품은 본체에 배치된 보조 부품이다. 표준부품이 부족할 경우 어느정도로 제품의 사용과 성능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옵션부품은 표준 배치외의 제품 기능을 증강하고 제품 성능을 향상 시킬수 있는 부품을 가리킨다. 표준부품과 달리 옵션부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품의 기본 기능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속제품은 전기전자제품의 일부분으로서 <관리방법>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Q11. 전기전자제품 정의중 “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련되는 설비 제외”는 주로 어떤 설비를 제외하는지? 이것 외에 또 어떤 제품과 상황이 배제되는지?

답: 이하 전기전자설비 및 그 전용 또는 맞춤제작의 조립제품은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련되는 설비. 예를 들면 발전소, 송배전소, 건물 송배전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설비.
2.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설비.
3. 특수환경 또는 극단 환경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설비.
4. 수출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설비.

주: 수출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설비는 수출 목적지 국가/지역의 유해물질 제한사용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임시 수입제품 또는 입국 정비. 단 판매하지 않는 전기전자설비.
6. 과학연구/연구개발, 테스트 용도로 사용되는 샘플기기.
7. 회의전시, 전람 등 용도로 사용되지만 판매하지 않는 샘플, 전시품 등.

Q12. <관리방법>에는 <전자정보제품 분류 주석>과 유사한 파일로 <관리방법> 적용 제품을 열거한 목차가 있는지?

답: 원 방법의 <전자정보제품 분류 주석>은 열거법을 이용하여 적용되는 10 종 제품을 열거하였다. 단, <관리방법>의 적용범위는 이미 전기전자설비 및 그 부속부품 까지 확장되었다.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발전이 빠르고, 제품 업그레이드가 빠른 특점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열거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모든 전기전자설비를 궁구하기 어렵다. 현재 <관리방법>에 적용된 주요 설비 대부분을 귀납 및 설명 2의 방식을 이용하여 관계자의 집행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분류 대조의 참고 사용으로 하고 또한 기타 <관리방법> 제품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파일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다.

<관리방법>의 적용범위는 하기 설비 유형 및 그 부속제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통신설비

고정 또는 이동통신 접입, 전송, 교환 설비, 통신단말기 등 유선통신설비와 무선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속도측정 레이더, 무선 원격조종 및 네비게이션 설비, 소형 무전기, 핸드폰, 팩스, 전화기, 무선주파수 제품 등.

2.텔레비전 방송설비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관리 설비, TV 방송 발사 및 전송설비 및 TV 활용 설비 등. 예를 들면 전문 TV 방송 접수설비, 전문 녹음/녹화 재생 및 음향설비 및 감시 TV, 교육 TV, 특수이미징 TV, 특수기능 TV 와 추적 TV 등 TV 활용 설비 등.

3.컴퓨터 및 기타 오피스설비

컴퓨터설비는 컴퓨터 조립완제품 및 그 외주설비 및 컴퓨터 네트워크설비와 금융,

정보안전, 공업관리, 정보수집 및 식별 등 영역에 활용되는 컴퓨터 활용 전자설비 및 단말기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워크스테이션, 서버, 마이크로 컴퓨터, 학습기, 전자사전, 전자앨범, 라우터, 프린터,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비, IC 카드 판독기록기기, 펜 태블릿, 바이오 특징 식별 설비, 이동식메모리기기, 무정전 전원, 음성 및 도형 이미지 수출설비 등.

기타 오피스설비는 환등 및 투영설비, 카메라, 복사 및 오프셋 인쇄 설비, 컴퓨터 및 화폐 전용 설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각종 용도의 복사설비와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를 일체화한 다기능 일체형기기, 슈레더, 타자기, 출퇴근 기록기, 전자계산기, 지폐 계수기 등.

4. 가정용 전기전자설비

가정용 전기전자설비는 가져용 및 유사한 용도의 전기전자 설비 및 장치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오디오/비디오 설비, 음향설비, 냉각전기기구, 공기조절기, 통풍전기기구, 주방 전기기구, 청결위생 전기기구, 미용 전기기구, 보건 전기기구, 전열전력기구 및 재봉, 편직 등 가공설비 및 유사 제품 및 전자시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가정용 가스취사기구, 가스 난방기, 가스온수기, 태양에너지 온수기 등 전기 보조 가정용 기구 및 보안, 모니터링 등 시스템 단말기 등을 포함한다. 그중 "가정용 및 유사 용도"는 주로 가정에 사용되지만 사무실, 공장, 상점,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비전문인원이 사용하는 비생산형 기기 및 장치를 가리킨다.

5. 전자계측기

전자계측기는 각종 물리량, 물질성분, 특성 파라미터 등을 검출, 측량, 관찰, 계산하는 전자기구 또는 설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전공전자측량기기, 전자분석기기, 전자계수/시간기록계, 전자모니터링설비 및 기기 등.

6. 공업용 전기전자설비

공업가공, 생산 및 검측용 전기전자설비, 공업관리용 모니터링기기 설비 등을 포함한다.

7. 전동 공구

전동공구는 모터 또는 전기자석을 동력으로 하고 전동기구를 통하여 작업 해드를 구동하는 기계화 공구를 가리킨다. 휴대형, 이동식 및 원림 전동공구를 포함한다. 조작방식 및 용도에 따라 금속 절삭류, 폴리싱류, 조립류, 임목류, 농목류, 원예류, 건축 도로규 및 광산류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8. 의료전자설비 및 기구

의료전자설비 및 기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전자계측기, 설비, 기구 및 기타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물품을 가리키며 질병의 진단, 예방, 간호, 치료 또는 완화에 사용된다.

9. 조명제품

전기광원과 등구를 포함한다. 전기광원은 백열등, 텅스텐 할로겐 램프, 형광등 및 고강도 기체 방전등 및 LED 램프 등을 포함한다. 등구는 실내조명용 등구, 실외 조명용 등구 및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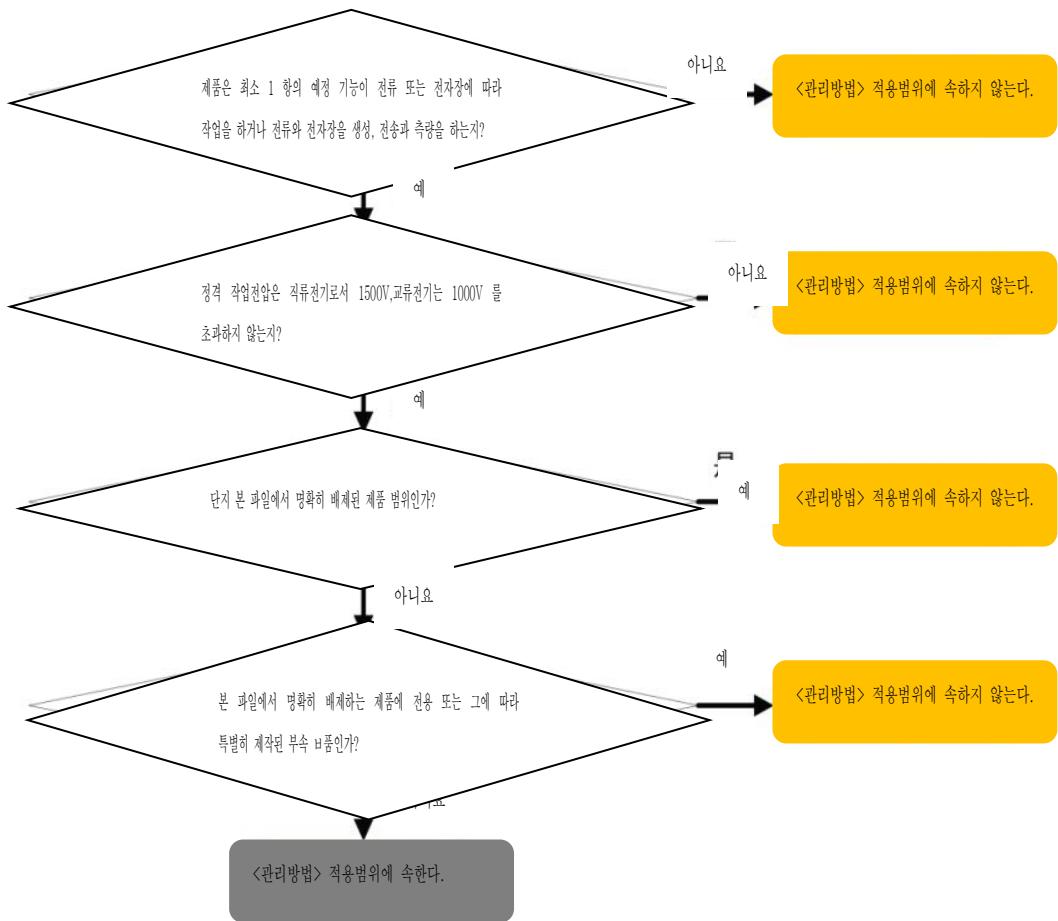
10. 전자문교, 공미, 스포츠 및 오락제품

각종 전자악기 및 전자 또는 전기 모듈을 장착한 완구, 스포츠용품 및 오락기 및 오락 용품을 등을 포함한다.

Q13. 관계자는 어떻게 전기전자설비가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지?

답: 하기 흐름은 법규와 본 파일중 <관리방법> 적용범위 관련의 조관을 귀납하였다.

관계측은 하기 흐름에 따라 제품이 <관리방법> 제품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필요시 관계측은 그 제품이 본 파일에서 명확히 배제되는 제품 유형에 속하는 증명자료를 보존 또는 제출해야 한다.



二、관련 적용범위의 구체 사례

Q14. 전동운수기구 및 공구는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답: 전동운수기구 및 공구는 전기전자제품에 속하지 않기에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Q15. 활용이 다른 전자와 축전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지?

답: 명확히 <관리방법>에서 배제한 제품의 전용 배터리 및 축전지는 적용하지 않고

기타 각종 모델의 배터리와 축전지는 모두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Q16. 활용이 다른 전선 케이블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답: Q11 제1항에서 배제한 관련되는 송/배전 케이블외에 기타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설비의 케이블은 모두 <관리방법>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최종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케이블도 <관리방법>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Q17. 토너, 카트리지 등 소모품은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답: 자체가 전기전자제품에 속할 경우 소비자는 스스로 교체 설치사용한 소모품(예를 들면 토너, 카트리지 등)은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자체가 전기전자제품에 속하지 않는 소모품, 예를 들면 청소기용 집진백 등은 청소기와 함께 판매할 경우 <관리방법>요구를 만족해야 하며, 단독적으로 판매할 경우는 <관리방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Q18. 위탁가공 제품과 수탁가공 제품은 모두 <관리방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지?

답: 위탁가공, 위탁조립은 광의적으로 말하면 국외로 부터 제공한 원자재, 부품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가공하거나 조립완제품을 조립한후 수출하는 행위이다. 수출제품과 수출 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자재, 부품은 <관리방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수탁가공은 국외로 부터 제공한 원자재,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가공하거나 조립완제품을 조립한후 판매하는 것이다. 제품 수출의 경우는 <관리방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제품을 중국 경내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는 <관리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출 제품은 수출 목적지 국가/지역의 유해물질 제한사용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Q19. <관리방법> 적용범위외 제품에 예정 설치되는 전기전자제품은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답: 단지 <관리방법> 적용범위외 제품에 예정 설치된 전기전자제품은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비행기 의자에 예정 설치된 디스플레이, 발전설비에 예정설치된 통용 소자 등. 단, 이들 제품은 최종용도를 명확하지 않고 또한 시장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할 경우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Q20. A/S중의 조립완제품 교환보증 제품은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답: 조립완제품 교환보증 제품은 원 제품 성질과 같은 신제품의 시장 투입으로 간주하고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한다.

Q21. 이미 판매 사용후 중고 전기전자제품으로서 다시 판매시 <관리방법>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답: 중고 제품은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

Q22. 임대 제품은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답: 제품을 임대방식으로 시장에 투입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하며 <관리방법> 적용범위에 속한다.

Q23. <관리방법> 실시후 해외 모회사에서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게 전매 할 경우 <관리방법>의 요구를 만족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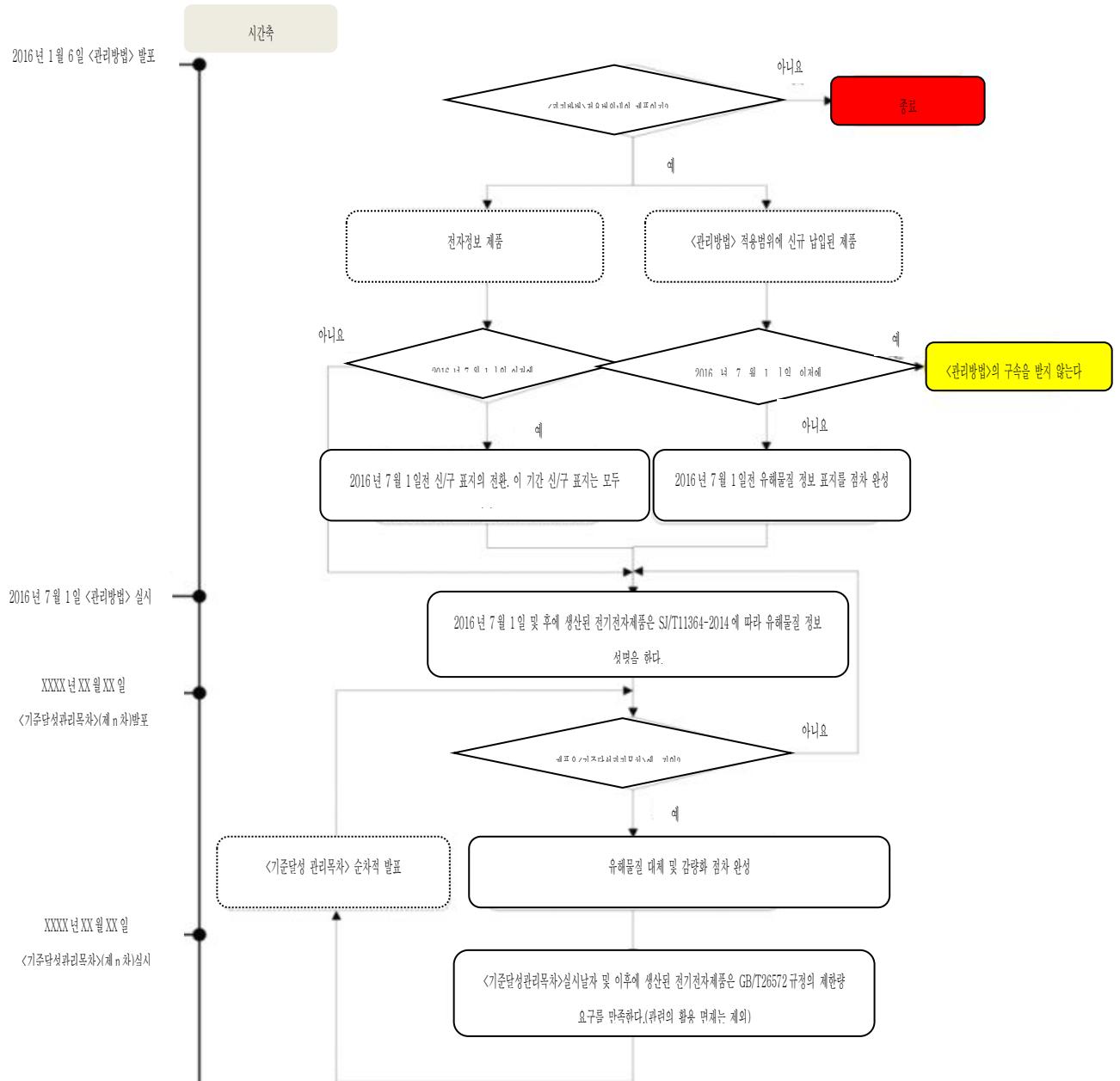
답: 해외 모회사가 제품을 부동한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중국 자회사에 전매할 경우는 <관리방법>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해외 본사로 부터 제품을 동일 법인 자격을 가진 중국 지사에 전매할 경우는 회사 내부의 자산 이전에 속하며 "시장 투입"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관리방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제3부분 <관리방법>의 기본요구

一、<관리방법>의 실시 및 기업 집행 과정

Q24. <관리방법>의 실시 및 기업 집행과정은 대체로 어떠한지?

답: 이하 흐름은 <관리방법> 실시 및 업체 집행의 대체 과정을 총화 하였다.



二、유해물질 제한 종류

Q25. <관리방법>중 제3조 제(五)관중의 “7.국가 규정이 기타 유해물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 이는 중국법률 규범성 파일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다. 기술발전과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공업 및 정보화부는 시기적절하게 본 조항중의 유해물질 도표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다.

三、 표지 요구사항

(一) 과도기내 기준에 관한 집행

Q26. <관리방법>실시 날자전에 관계자는 SJ/T 11364-2014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답: SJ/T 11364-2014는 이미 2014년 7월 9일에 발표되었다. 공업 및 정보화부의 2014년 제88호 공고4에 따라 SJ/T 11364-2014의 실시날자는 <관리방법>의 실시날자와 일치하다. 즉 <관리방법>의 실시날자로 부터 SJ/T 11364-2014도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또한 실시된다. 따라서 <관리방법>의 실시날자전에 관계자는 SJ/T 11364 신/구 기준의 교체를 점차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신/구 기준의 집행은 모두 <관리방법>의 요구에 부합된다.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에 신규 납입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관계자는 과도기내에서 SJ/T 11364-2014의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품 유해물질 정보 표지를 완성해야 한다. 관계자는 2016년 7월 1일 및 이후에 생산된 전기전자제품이 SJ/T 11364-2014의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Q27. 기업은 어떻게 조작하여 SJ/T 11364-2014의 관련규정을 만족하고 동시에 어떤 파일에 근거하여 제품중의 유해물질 정보에 대하여 성명을 해야 하는지?

답: 관계자는 업체 자체의 유해물질 관리방식과 리스크 관리조치에 따라 아래 방식을 통하여 조합하여 전기전자제품중의 유해물질 정보을 수집, 통합하고 또한 SJ/T11364-

2014요구에 따라 제품중의 유해물질 정보에 대하여 표지를 한다.

- a) 상위 공급자로 부터 관련된 자아성명 정보 및 지원적 기술파일의 제출을 요구한다.
- b) 기존의 어느측으로 부터 취득한 진실, 유효한 제품 검측보고서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위탁하여 제품중의 유해물질을 검측한다.
- c) 유효한 제3자 제품 인증서.

관계자는 성명된 정보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야 한다.

Q28.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의 시작 날자는 어느 날짜에 준하는지?

답: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사용기간의 시작날자는 그의 생산날짜에 준한다.

Q29. SJ/T 11364-2014 공식적으로 실시후 기업의 이전에 사용이 끝나지 않은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표"는 계속하는거나 삽입 페이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원 도표의 정오로 할수 있는지?

답: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SJ/T 11364-2014 실시날자 후 업체에서 사용이 끝나지 않은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표"는 기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계속 사용할수 없다. 해당 도표가 제품 설명서의 일부분 또는 제품 포장위에 인쇄 될 경우 설명서/포장은 계속 사용할수 있다. 단, 절약을 감안하여 업체는 삽입페이지 등 형식으로 원 도표를 사용할수 있다.

(二) 기준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Q30. <관리방법>의 적용범위는 전기전자제품, SJ/T11364-2014의 제품 적용범위는 전자전기제품 이다. 기업은 SJ/T11364-2014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답: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의 제품은 SJ/T 11364-2014에 따라 라벨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관리방법> 적용범위내에 있지 않지만 SJ/T 11364-2014

기준범위내에 있는 제품은 업체에서 SJ/T 11364-2014에 따라 제품을 표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三) 전기전자설비 부속제품에 관한 표지 문제

Q31. 생산조립을 위한 구매활동에서 공급체인 상/하위 기업은 유해물질 정보를 어떻게 전달 및 표지해야 하는지?

답: SJ/T 11364-2014의 규정에 따라 생산 조립을 위하여 구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관하여 공급자는 제공된 제품에 표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반드시 구매자에게 표지에 필요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로 업체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의 반복 표지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에 따라 표지는 단지 최종제품에 나타날수 있다. 단, 표지 정보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부분을 포괄해야 한다. 상위 공급자는 하위 고객에게 표지에 필요되는 전부 정보를 제출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중 생산 조립을 위하여 구매된 전기전자제품은 생산조립을 위하여 국외로 부터 구매된 전기전자제품 부품, 소자 또는 원자재를 포함한다.

Q32. 판매후 교환보증 또는 정비에 사용되는 예비부속품은 표지를 해야 하는지?

답: 전기전자설비의 예비부속품은 통상적으로 설비위의 동 유형 제품의 정비, 업그레이드에 사용된다. 반복되는 표지를 피하기 위하여 A/S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설비의 예비부품은 표지가 필요 없다.

Q33. 자체는 전기전자설비의 부품에 속하지 않지만 완제품과 함께 판매할 경우는 표지를 해야 하는지? 함량표에는 이들 부품의 유해물질 함유 상황을 명기해야 하는지?

답: 자체는 전기전자설비의 부품에 속하지 않지만 완제품과 공동 판매할 경우 그가

제품구조 요구 또는 기능 만족에 반드시 필요되는 국부 일 경우 예를 들면 전동재봉틀의 확장 테이블, 카메라의 후드 등은 SJ/T 11364-2014에 따라 표지를 하고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표"중에도 이들 부품의 유해물질 함유 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지를 하지 않는다.

Q34. 분해 가능한 전기전자설비 부품에 대하여 그 자체도 전기전자설비에 속할 경우 친환경 사용기한은 단독적으로 주석하는지 아니면 완제품과 함께 주석을 하는지 ?

답:분해 가능한 부품 경우 그 자체도 전기전자설비에 속할 경우 (예를 들면 전원 어댑터, 키보드 등) 업체는 스스로 완제품과 함께 친환경 사용기한 주석 여부를 선택한다. 함께 주석을 할 경우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표"중에는 이들 부품의 유해물질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각기 주석을 할 경우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표"는 각기 주석 또는 함께 주석하는 것을 선택할수 있다. 단, 표중에는 이들 부품을 포괄하고 또한 유해물질 소재의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정기적 교체가 필요되고 또한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부품은 특하는 해당 부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이 설비의 기타 부분 보다 낮을 경우 정기적 교체가 필요되는 부품과 완제품을 구분하여 표지한다. 이 경우 조립완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은 교체 부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Q35. 다수 전기전자제품이 포함된 플랜트는 어떻게 표지를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TV 및 그와 함께 판매하는 리모컨은 모두 단독적인 표지를 해야 하는지?

답: 설비를 구성한 몇개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이 다를 경우는 단독적으로 표지를 할수 있다. 친환경 사용기한이 같을 경우는 각기 표지하거나 본체에 표지를 할수 있다. 함량표에는 세트 설비의 유해물질 함유 상황을 포함하고 또한 유해물질 소재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四) 마크 내용 및 마크에 관한 구체요구사항

Q36. 제품중의 유해물질 함량이 모두 GB/T 26572-2011 에 규정된 제한량 요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SJ/T 11364-2014 의 [그림 1]에 표시한 "e"표지를 표지해야 하는지?

답: SJ/T 11364 - 2014 제 6.2.1 의 요구에 따라 제품중에서 유해물질 함량이 GB/T 26572-2011 에 규정된 제한량 요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그림 1]("e"표지)을 선택하여 표지를 하고 또한 유해물질 함량표를 성명할 필요가 없다.

Q37. SJ/T 11364-2014 제5.1 [그림1] 표지중의 "e"는 어떤 글자체 인지? 비례는 어떠한지?

답: 표지 설계의 미관을 위하여 표지중의 "e"는 미술글자체를 사용한다. 그 구성 비례는 SJ/T 11364-2014 제5.4.1의 [그림3]의 기준 격자로 부터 얻는다. 관계자는 아래 홈페이지로 부터 [그림1]. [그림2]의 전자판을 다운하여 사용할수 있다.

<http://www.cesi.cn/cesi/wrkz/biaozhunhuayanjiu/2016/0309/12419.html>

Q38. SJ/T 11364-2014에는 녹색마크와 오렌지색마크가 규정되었는데 반드시 이 두가지 색깔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업의 집행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색깔이 표지와 가까울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답: SJ/T 11364-2014는 유해물질 제한사용 표지의 색깔에 대하여 강제적 규정을 하지 않았다. SJ/T 11364-2014 제5.3에 따라 녹색과 오렌지색은 각기 다른 마크의 제안 색깔 이다. 생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실제상황에 따라 표준요구의 사이즈 규격에 따라 기타 색깔로 표지를 할수 있다. 단, 표준 6.1.1.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Q39. SJ/T 11364-2014 제5.4.2중에 규정된 표지 규격은 최소 5mm×5mm이다. 이와 같은 크기의 표지를 제품에 부착하면 뚜렸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 SJ/T 11364-2014에서 제시한 표지 규격은 단지 최소 요구 이다. 주석할 경우 재품

규격의 실제상황에 따라 표지를 비례에 따라 확대할수 있다.

Q40. SJ/T 11364-2014 제6.6.2 [표1] 최 하단의 “업체는 이 곳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표중의 “x”를 표기한 기술원인에 대하여 진일보적으로 설명할수 있다”는 무슨 뜻인지?

답: SJ/T 11364-2014의 규정에 따라 제품중의 어떤 유해물질의 함량이 GB/T 26572-2011 규정을 초과할 경우 “x”를 표기해야 한다. 그중에 업체가 현재 기술 또는 경제 등 원인으로 임시 대체 또는 감량화를 실현할수 없을 경우 팔호에 진일보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다.

Q41. SJ/T 11364-2014는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 표지는 부품에 대응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제품의 부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부품은 성명된 유해물질 함량표에 열거를 해야 하는지?

답: 전기전자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기에 제품의 부품 구분은 하나하나 열거할수 없다. 구체적인 부품 구분 방식은 업체가 스스로 규정한다. 단, 제품의 각 구성부분을 포함하고 또한 단일 부품 또는 동류 부품을 단위로 유해물질 함량을 성명하여 전면적으로 제품중의 유해물질 함량 상황을 반영한다.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부품은 SJ/T 11364-2014 제6.2.2의 [표1]의 유해물질 함량표에 열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Q42. “기타”로서 구분하기 어려운 부품을 표시할수 있는지? 즉 “기타”를 SJ/T 11364-2014 [표1]중의 부품 명칭으로 한다.

답: 부품에 따라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을 표지하는 목적은 회수업체로 하여금 제품중의 유해물질 정보를 더욱 쉽게 알게 하는 것이다. “기타”로 “부품 명칭”을 대체할 경우는 이런 역할을 할수 없다.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

Q43. 제품 설명에서 SJ/T 11364-2014 [표1]에 주석된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사용 할 경우 도표의 표지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 SJ/T 11364-2014에서 제출된 도표는 기본요구 이다. 업체는 도표의 표지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및 회수업체에게 더욱 많은 유해물질 정보를 알릴 수 있다. 단, 기존 도표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기존 정보의 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유해물질의 수량 증가 및 부품위에 매개 부품 각자의 친환경 사용기한 등을 밝히는 것은 모두 허락한다.

Q44. SJ/T 11364-2014 제6.3에서는 "..., [그림2]를 선택하여 표지를 할 경우 표지중의 수자를 표지제품의 실제 친환경 사용기한으로 대체하고 또한 제품설명에서 친환경 사용기한내의 사용조건, 조립품 특별 표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사용조건, 조립품 특별표지에 대하여 진일보로 설명하세요.

답: 부동한 사용조건하에서 동일 제품의 친환경 사용기한은 다를 수 있다. 동시에 제품의 적당하지 않는 사용 또는 취급으로 환경과 인신 건강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 친환경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제품의 특점과 예정 설계된 작업조건과 장소에 따라 제품 설명에 제품의 사용환경조건, 사용방법 및 각종 오용을 방지하는 제시 또는 경고 정보를 명시한다. 예를 들면 "고온에 멀리하기", "마음대로 분해 금지" 등 유사한 정보. "부속제품 특별 마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자가 프린트 소모재, 배터리 등 특수한 조립품에 대하여 단독적인 유해물질 제한 사용 표지를 사용한다.

(五) 일부 구체적 마크 표시 사례

Q45. 현재 다수 전기전자제품은 배터리를 분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은

배터리와 함께 하나의 표지를 주석하는지?

답 : 배터리 분해 불가능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제한 사용 표지는 1개만 주석할수 있다. 단, 유해물질 함량표에는 배터리를 포함된 제품의 전부 유닛을 포함해야 한다.

Q46. 어떤 핸드폰 제품의 라벨은 배터리 케이스내에 있는데 마크는 라벨과 같이 이 위치에 주석을 달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배터리 분해 가능한 핸드폰 제품에 대하여 그 배터리 케이스는 소비자가 배터리를 분해할 경우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핸드폰 제품은 배터리 케이스내에서 표지를 할수 있으며 또한 SJ/T 11364-2014 제6.1.1중의 관련 표지는 뚜렷하고, 쉽게 퇴색되지 않으며 또한 쉽게 제거할수 없는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Q47. 제품 설명과 포장이 일체화 경우 마크와 함량표를 포장위에 함께 주석을 할수 있는지?

답: SJ/T 11364-2014 제4장 "총칙"의 규정에 따라 제품설명의 캐리어는 포장물이 가능하다. 제품이 6.1.2 제2 단락에 기술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마크를 포장위에 주석할수 있다.

四、제한량 요구사항

Q48. <관리방법>은 <기준도달 관리 목차>에 편입된 제품은 제한량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업체는 <기준도달 관리 목차>에 참여 및 제정을 할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공업 및 정보화부는 관련 부 및 위원회와 합동하여 산업발전 상황에 따라 공개, 투명의 원칙으로 배치 마다 <기준도달 목차>를 발표 한다.

Q49. <기준도달 관리 목차>에 편성된 제품은 어떤 유해물질의 제품중에서의 활용을

명확히 예외(면제)를 해야 하는지?

답: <기준도달 목차>에 편성된 제품은 유해물질의 관련 활용 예외(면제)를 명확할 것이고 또한 <기준도달 목차>와 함께 발표한다.

Q50. <기준도달 관리 목차>는 과도기를 설치하는지?

답: <기준도달 목차>는 일정한 집행 과도기를 설정하고 또한 <기준도달 목차> 발표시 명확히 한다.

Q51. <관리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기준도달 목차>에 편성된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합격 평가제도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격 평가제도는 도대체 어떤 형식과 내용인지?

답: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합격평가제도는 <관리방법> 제18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또한 적당한 형식으로 발표 한다.

제4부분 <관리방법>의 기타 요구사항

Q52.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및 생산도 대응된 국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예조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서 친환경에 유리한 방안을 채택한다. 그렇다면 제품 설계와 생산에 대하여 엄격한 요구는 있는지?

답: <관리방법> 제9조, 제10조는 전기전자제품을 설계 및 생산 할 경우 관계자는 관련의 국가기준과 업종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자원 이용율이 높고, 회수처리하기 쉽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방안과 기술제한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제품중의 사용을 도태 한다. 이 두 단계는 추천적 요구에 속하며 강제적 요구가 아니다.

Q53. 전기전자제품 포장은 <관리방법>의 관할범위에 속하는지?

답: <관리방법> 제12조는 전기전자제품 포장물은 관련 기준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해, 쉽게 분해 및 회수재활용에 편리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포장물은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속해야 한다. 단, 해당 조관내용은 현단계에 있어서는 추전적 요구이다. <관리방법>은 포장물 표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기에 전기전자제품 포장물의 표지 문제는 관련 규정 및 국가기준을 참조 할수 있다.

Q54. <관리방법>은 전기전자제품 폐기후의 회수, 처리, 재활용 문제에 관련되는지?

답: <관리방법>의 입법 취지의 하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후의 분해, 처리에 편리하고 전기전자제품 폐기후 환경에 대한 오염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단, <관리방법>은 "원천으로부터 취급"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과정의 행위에 대하여 요구를 제출하였다. 전기전자제품 폐기후의 회수,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국무원령제551호)와 기타 관련의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부분 관련 법칙

Q55. <관리방법>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하여 제3장의 법칙에는 구체적인 처벌조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었때문인가?

답: 각 관련 부서/위원회는 부동한 상황에 대하여 각자의 처벌조관이 있기에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은 본 장에서 구체적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방법>요구를 위반한 업체, 개인에 대하여 인계 또한/ 또는 상무, 해관, 품질검사, 공상 등 기관으로부터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Q56. <관리방법> 효력발생후 최종 제품 생산자는 양호한 그린 공급체인 관리체계를 가진다 해도 최종제품이 공급체인의 원인 때문에 해당 법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발견 할 경우 최종 제품 생산자이 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그의 상위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지?

답: 최종 제품에서 <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부품 또는 소자 등 상위 공급업체가 초래한 문제도 최종제품의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그 상위 공급업자의 책임은 최종제품의 생산업체가 스스로 추적을 해야 한다.